제413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고품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 양향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5867호)

2024. 2.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정 은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2

Ⅳ. 입법의 재정영향 ····· 5

Ⅰ.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양향자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3. 12. 8.

다. 회 부 일 : 2023. 12. 1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자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계장치 등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국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이라 함) 기업은 중고품 장비를 구매하고 있어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통합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중고품을 공제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소부장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부장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

Ⅲ. 검토의견

1. 중고품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r>
<tr><td>□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 적용대상: 모든 개인사업자·법인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제외)
○ 공제대상
-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자산 제외
· 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
· 토지·건물 등 구축물, 차량·운반구·선박·항공기 등 제외하되 일부 예외 인정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제외하되, 일부 예외 인정 (중소기업의 대체투자, 산업단지 내 증설투자 등)
○ 공제율: 당기분 기본공제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기본공제(당기분)</th><th rowspan="2">추가공제</th></tr>
<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
<tr><td>일 반</td><td>1</td><td>5</td><td>10</td><td rowspan="2">3</td></tr>
<tr><td>신성장·원천기술</td><td>3</td><td>6</td><td>12</td></tr>
<tr><td>국가전략기술</td><td>15</td><td>15</td><td>25</td><td>4</td></tr>
</table>
</td><td>□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중고품 포함
○ (현행과 같음)
○ 공제대상
- 중고품을 공제대상에 포함
○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td></tr>
</table>

* 양향자의원안 2023. 12. 8. 제출(의안번호 25867)

□ 개정안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통합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중고품을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 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10개의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신설되었으며,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함.

또한, 해당 연도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에 더하여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한편,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을 통해 일반시설과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해서도 2023년에 한하여 2%p~6%p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한 바 있음.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전후 비교]

종 전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① R&D 설비(1/3/7) ② 생산성 향상 시설(1/3/7)* * 단, 대기업은 '20년 2%, 중견·중소기업은 '20~'21년까지 5%, 10% 적용 ③ 안전 설비(1/5/10) ④ 에너지절약 시설(1/3/7) ⑤ 환경보전 시설(3/5/10) ⑥ 초연결(5G) 네트워크 시설(최대 3) ⑦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1/3/6) ⑧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5/7/10) ⑨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3/5/10) ⑩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0/2/3) ※ 괄호 : 대/중견/중소기업 공제율(%)	⇒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단, 토지·건물, 차량, 비품 등 제외)

□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한 이후 조세지출은 2020년 소득세 217억원·법인세 6,009억원에서 2022년에는 소득세 810억원·법인세 2조 1,187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의 영향으로 2024년도에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소득세	217	491	810	1,036	1,914
법인세	6,009	12,969	21,187	19,746	54,919
합 계	6,226	13,459	21,997	20,782	56,832

주: 2023, 2024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중고품을 통합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서 중고품 장비를 구매하는 대부분의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현행법상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중고품은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 국가전략기술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였더라도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1)]

특히, 반도체 장비는 주문에서 납품까지 걸리는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어[2)] 중고장비 도입을 통해 신속한 투자를 지속해나가야 하는

1) 아시아경제, '반도체 장비 공급난…업계 "조특법 세액공제에 중고장비도 포함해야"', 2023.07.03
2) 8인치(200mm) 웨이퍼는 24개월, 심자외선(DUV)·극자외선(EUV) 노광 장비는 18개월씩 소요.

상황임에도 중고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져있어 투자 확대에 장애가 된다는 것임.

장비 반입이 어려우면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중고장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기업들이 적기에 장비를 반입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중고품에 대한 투자는 사업용 자산의 기업간 이전만 가져올 뿐 투자가 순수하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해당 장비의 중고거래 시마다 중복공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둘째, 개정안은 중고장비에 의존하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나, 적용대상을 특별히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모든 산업의 중고품에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상당한 규모의 법인세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Ⅳ. 입법의 재정영향

□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제대상이 확대되어 법인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업의 중고자산 취득·투자 관련 현황 등 관련 자료를 파악할 수 없어, 합리적인 세수효과를 추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3)]

3)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고.

문 의 처
02)6788-5157